

#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7. 6.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교육경비 지원신청 및 교부통지를 받을 때 교육장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장의 감독을 받지 않는 교육기관의 지휘체계를 존중하여 군수에게 직접 신청 및 통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며,
-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의 교육예산 지원사업의 심의시기를 조례입법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 이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교육지원금 신청시기를 실질적인 심의가 필요한 예산편성 이전으로 명문화하여 신설함(안 제4조의2).
- 나. 고등학교는 교육경비 지원신청 및 교부통지시 교육장을 경유하지 않고 군수에게 직접 신청 및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승인을 받은 지원금에 대한 위원회의 중복심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 3. 참고자료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 나. 관련법령 : 붙임 2
- 다. 입법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2007.4.23~5.12)
- 라.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마.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금의 신청) ①학교의 장이 교육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예산편성 이전까지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교육장은 초·중학교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교육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고,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③지원금의 교부를 통지할 경우에는 초·중학교의 장에게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통지하고, 고등학교의 장에게는 직접 통지한다.

제12조 각호외의 부분중 “교육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고”를 “군수에게 신고하되, 초·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을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4조의2 관련)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 적			
<b>보조사업의 소요경비</b>			
총사업비(원)	군비보조(원)	자체부담(원)	기 타(원)
보조사업의 기 간	. . . . ~ . . . .		
사업계획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b>평창군수 귀하</b>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1】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설&gt;</p>	<p>제4조의2(지원금의 신청) ①학교의 장이 교육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예산편성 이전까지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야 한다.</p> <p>②교육장은 초·중학교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제10조(지원금의 교부신청 등) ①군수는 당해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교육장에게 통지하고, 교육장은 학교의 장(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군수에게 일괄 제출하되, 교육장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도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1.~5. (생략)</p> <p>② (생략)</p> <p>1.~4. (생략)</p>	<p>제10조(지원금의 교부신청 등) ①군수는 교육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고,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야 한다.</p> <p>1.~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제11조(지원금의 교부결정) ①군수는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지원금 교부결정서를 통지한다.</p> <p>1.~4. (생략)</p> <p>② (생략)</p> <p>&lt;신설&gt;</p>	<p>제11조(지원금의 교부결정) ①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지원금의 교부를 통지할 경우에는 초·중학교의 장에게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통지하고, 고등학교의 장에게는 직접 통지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2조(지원사업의 신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u>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1.~4. (생략)</p>	<p>제12조(지원사업의 신고) ----- ----- ----- ----- <u>군수에게 신고하되, 초·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u>-----.</p> <p>1.~4. (현행과 같음)</p>
<p>제14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u>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14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 ----- <u>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u>-----.</p> <p>②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발취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9.17, 2000.12.27>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개정 2000.12.27>)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12.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 (보조의 신청등)** 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